동아리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동아리 명칭]

⓵ 본 동아리의 명칭은 “UNSA”로 한다

제 1-1조 [유엔한국학생협회 명칭]

⓵ 유엔한국학생협회(UNSA-ROK)의 본부를 이하 본회라 칭한다.

⓶ 본회가 전국 각 대학에 설치 및 운영하는 기구를 이하 지회라 칭한다.

⓷ 본회가 전국 각 지역에 설치 및 운영하는 기구를 이하 지부라 칭한다.

⓸ 본회, 지회, 지부가 참석하여 각 기구의 권한과 운영에 대해 토의한 뒤 의결권을 행사하여 안건에 관해 합의하는 장을 이하 총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⓵ UN 헌장의 목적 및 이념을 확산한다.

⓶ 국제 학생들 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한다.

⓷ 국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청년 상호 간의 대화를 촉진한다.

제 2-1조 [사업]

⓵ UN 및 국제 시사에 대한 지식의 보급

⓶ UN의 목적 및 이념을 구현, 확산하기 위한 행사 및 활동 기획 후 실천

⓷ UN 및 국제관계 사항에 관한 연구 및 조사

⓸ 유엔한국협회(UNSA-ROK)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협력

⓹ UN 및 UN 산하 기구와 공동목적을 가진 대외 단체와 연락 및 협력

⓺ 국제 학생들 간의 상호 교류

⓻ 지회 또는 회원 상호 간의 신뢰와 공동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모임과 행사 주관

제 3조 [동아리 소재]

⓵ 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 2장 임원진 및 집행부

제 1조 [임원진의 임기]

⓵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기획부장, 학술부장, 홍보부장, 총무부장으로 정의한다.

⓶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⓷ 임원진의 연임은 1회까지 허용한다.

제 2조 [임원진 선출 방식]

⓵ 회장, 부회장의 선출은 숭실총회에서 동아리 내 투표로 선출된다.

⓶ 임원진 중 집행부의 부장은 회장, 부회장이 임명한다.

제 3조 [임원진]

⓵ 회장은 동아리 내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⓶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⓷ 기획부장은 동아리 내 모든 활동을 기획한다.

⓸ 학술부장은 동아리 내 모든 학술 활동을 총괄한다.

⓹ 홍보부장은 동아리 내 활동을 매달 보고한다.

⓺ 총무부장은 회비를 관리하고 매 학기 결산안을 작성한다.

제 4조 [집행부]

⓵ 집행부는 임원진과 집행부원으로 구성되며, 집행부원은 임원진이 선임한다.

⓶ 집행부는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

가. 집행부는 각 부의 부장, 부원으로 구성하여 회장, 부회장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나. 유엔한국학생협회 총회와 숭실 UNSA 집행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다. 집행부는 제반 업무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 부서를 두며 필요한 경우 회장이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획부 : 제반 사업 기획 및 조정

2. 총무부 : 회비 관리, 결산안 작성

3. 홍보부 : 동아리 선전, 홍보활동, 지회의 자료 제작 및 자료발간 업무

4. 학술부 : 학술 행사 주관 및 유치

⓷ 각 부는 부장 1인과 부원으로 구성한다.

⓸ 각 부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회장이 재임명을 담당한다.

제 5조 [집행부 회의]

⓵ 집행부 회의는 집행부와 주 1회 진행한다.

⓶ 집행부 회의는 반드시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

⓷ 집행부 회의록은 반드시 회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 3장 회원

제 1조 [회원 자격 및 의무]

⓵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⓶ 회원은 본회의 헌장을 준수하며, 숭실 지회의 회칙에 근거하여 소속 기구에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⓷ 회원은 본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행동 통일의 의무와 비판의 권리를 동시에 갖는다.

제 2조 [회원의 가입]

① 본 동아리의 회원가입은 집행부가 정한 규칙에 따른다.

제 3조 [회원의 탈퇴]

①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집행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탈퇴가 성립된다.

⓶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원진은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가. 회원 간 마찰을 빚어 숭실지회와 소속 회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나. 회원이 유엔한국학생협회 숭실지회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다. 임원진이 1회 경고를 하였음에도 집행부원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라. 숭실지회 회원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경우

마. 지회장 혹은 부지회장 당선인의 부정선거가 밝혀진 경우

제 4장 회의

제 1조 [정기 모임]

⓵ 본 동아리의 정기 모임은 월 2회 이상 진행한다.

제 2조 [숭실총회]

⓵ 본 동아리의 숭실총회는 유엔한국학생협회의 총회와 구별된다.

⓶ 숭실총회의 재적의원은 대의원과 대의원이 아닌 일반 회원으로 구성된다.

⓷ 대의원은 당해 활동하는 회장, 부회장, 기획부장, 총무부장, 학술부장, 홍보부장으로 구성되며, 숭실총회의 의장은 지회의 회장이 겸한다.

⓸ 매년 상∙하반기에 연 최소 2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회한다.

⓹ 대의원만이 숭실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며, 의장은 재적의원을 소집하여 특별총회를 개회할 수 있다.

⓺ 숭실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⓻ 숭실총회의 모든 결정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모든 인원이 동의할 경우,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설정할 수 있다.

⓼ 숭실총회에 불참한 대의원은 숭실총회에서 정해진 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⓽ 대의원은 숭실총회 불참 시 7일 전까지 집행부 인원의 대리 출석을 의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집행부 인원은 지회의 대의원으로서 의결권을 위임받게 된다.

⓾ 숭실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가. 선거

나. 회칙 개정

다. 지회 회원 포상

라. 사업 계획 및 결산안 보고

마. 집행부에서 보고된 사항

바. 기타 발의된 안건

제 5장 재정

제 1조 [수입]

① 동아리의 수입은 회비로 정하며, 이는 본 동아리의 활동비로 사용된다.

제 2조 [회비]

**①**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집행부가 지정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⓶ 회비의 금액과 납부 시기 및 횟수는 회장, 부회장 당선인이 정한다.

⓷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유엔한국학생협회에 1인당 1회의 최초 등록비를 본회에 납부하여 본회의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당해 등록비는 유엔한국학생협회의 총회에서 산정한다.

제 3조 [결산보고]

① 회장은 숭실총회에서 당 학기의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제 6장 동아리 등록

제 1조 [등록]

①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

제 7장 부칙

제 1조 [회칙 발효]

초판 [2022.09.05]

제 2조 [회칙 개정]

①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이어야 한다.